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13

발의연월일: 2024. 8. 20.

발 의 자:김남희·김선민·송재봉

김정호 · 박상혁 · 이연희

장종태 · 남인순 · 이수진

김 윤ㆍ정성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, 성희롱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하는 때에는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규정은 없어, 피해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성폭력범죄, 성희롱,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 제목 중 "발령"을 "발령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 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는 소청심사 청구 사실 및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.
-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- 3.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행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6조(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| 제76조(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|
| <u>발령</u>) ① ~ ⑤ (생 략) | <u>발령 등</u>) ① ~ ⑤ (현행과 같 |
| | <u></u> 아 |
| <u><신 설></u> | ⑥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|
| |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다음 각 |
| 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|
| | 유로 인한 처분에 따른 경우에 |
| | 는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소청 |
| |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피해자에 |
| | 게 통보하여야 한다. |
| | 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|
| |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|
| | <u>성폭력범죄</u> |
| | 2.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 |
| | 2호에 따른 성희롱 |
| | 3.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|
| | 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|
| |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|
| |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|
| | <u>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</u> |
| |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등으 |
| | 로 정하는 행위 |
| <u>⑥</u> (생 략) | 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 |